"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."

함께서울

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
seoul.go.kr

수신 **수신자참조**

(경유)

제목 **"지방분권 헌법개정" 기획세미나(토론회) 개최 알림**

1. 항상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,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"지방분권"을 역점 추진중이며, 이와 관련하여 **"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"**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**기획세미나(토론회)**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
3. 귀 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,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첨부 서식에 따라 '15. 10. 15.(목)까지 명단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이메일)

가. 일 시 : 2015. 10. 22.(목) 14:00 ~ 17:00

나. 장 소 : **프레지던트호텔(31층, 슈벨트홀)**

○ 서울 중구 을지로 16 소재

다. 주 최 : 서울시, 서울연구원 공동

○ 후원 : 전국 시,도지사협의회, 전국 시장.군수,구청장협의회 등

라. 주 제 :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

붙임 1. 기획세미나(토론회) 개최개요 1부

2. 지방분권 헌법개정(개요) 1부.

3. 참석대상자 제출서식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자 한국헌법학회, 한국공법학회, 한국지방자치학회, 한국행정학회,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

주무관 남궁눌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0/12 서상범

협조자

시행 법무담당관-15847 (2015.10.12.) 접수 ( 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/ http://www.seoul.go.kr

전화 02-2133-6684 /전송 02-2133-0821 / ngn0106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◁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▷

지방분권 헌법개정 기획세미나(토론회) 개최

'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'을 주제로,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

☐ 개최일시 : '15. 10. 22.(목) 14:00 ~ 17:00

☐ 장　　소 : 프레지던트 호텔 (31층, 슈벨트홀)

☐ 주　　최 : 서울특별시 / 서울연구원 공동

☐ 진행개요

구 분		주제 및 참석자	
14:00~14:30		사전등록	
14:30~15:00		개회사, 축사, 기조연설	
15:00 ~ 15:30	발표	**주제: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전략**	
		사회자	**정희윤** (서울연구원 상생발전·분권연구센터장)
		발표자	**이국운** (한동대학교 교수)
15:30 ~ 16:30	토론	좌 장	**방승주** 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			김인호 (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)
			김성호 (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)
			이기우 (인하대학교 교수)
			안성호 (대전대학교 교수)
			신도철 (숙명여자대학교 교수)
16:30~17:00		종합토론 및 질의응답	

※ 토론자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.

지방분권형 헌법개정

○ 빈약한 지방자치 규정만을 내포한 현행 "헌법"만으로는 지방자치 분권에 한계
○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필요

□ 현행 '헌법'의 한계

○ 현행 지방자치 관련 헌법규정은 지방분권 실현에 미흡

-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**"법령의 범위 안"으로 제한** (제117조 제1항)
-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**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하며 자치조직권 제한** (제117조 제2항)
  ⇒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문제가 **국회의원의 입법재량하에 있음**
-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는 등 **자치재정권 확충 차단** (제59조)

○ 기존 개헌논의는 중앙권력 재편 위주로 '지방분권 원리의 헌정화'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개헌의제는 도외시

- 그동안 제기된 개헌논의는 내각책임제, 4년 중임제 등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**중앙권력 재편 논의에 집중**
-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**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은 중앙집권적 헌법원리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**

□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'헌법' 개정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시기

○ 대한민국이 "지방분권국가" 임을 천명
○ 입법권 배분의 원칙으로서 ⇒ 자치입법권 확대, 보장
○ 지방자치단체 종류 및 자치조직권 규정 신설 (광역, 기초)
○ 자치재정권 명시 조문 신설 ⇒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

- 지방분권 헌법개정 토론회 -

참석대상자 제출서식

연번	소 속	직위 또는 직급	성 명	비 고 (연락처)

※ 제출방법 : 이메일(ngn0106@seoul.go.kr) 제출

- 연락처는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번호 등 자유롭게 기입